

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67호의2서식] <신설 2025. 8. 7.>

국내대리인 [] 선임
[] 해임 사실 신고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7일
선임 (해임) 대상자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(이메일주소:)
	주소(법인)	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
	선임(해임) 업무	[]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[]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허가 등	
국외 제조· 생산자	상호(명칭)	제조(생산)국	
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	(이메일주소:)
	주소(사업장)	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
최종 수출자	상호(명칭)	제조(생산)국	
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	(이메일주소:)
	주소(사업장)	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
화학 물질 정보	화학물질 확인	제품명(상품명)	
	화학물질 허가신청 등	허가물질명[명칭, 화학물질 식별번호(CAS No.)]	
		제품명(상품명)	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4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·생산하려는 자가 국내대리인을 [] 선임 [] 해임한 사실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2조의3제1항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(선임사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 음
담당자 확인사항	2.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)	

작성방법

- 최종 수출자란은 국외 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임(해임) 사실 신고증에 최종 수출자가 기재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화학물질 정보란은 복수의 제품명(상품명) 또는 허가물질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.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